

2023년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21.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0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61건(안건번호 제2023-135013호~13807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35013호~제2135014호(순번 1번~2번)는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35015호~135047호(순번 3번~35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35048호~135064호(순번 36번~52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35065호~135096호(순번 53번~84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전송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35097호~135114호(순번 85번~102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35115호~135138호(순번 103번~126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무단 번역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용자가 번역한 것으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권리자가 직접 신고한 건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135139호~138073호(순번 127번~3061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71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0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11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4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037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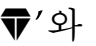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와 '◆◆' 카페에서 제공중인 방송 불법복제물 총 27건임.

해당 저작물은 모두 현재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서비스중이거나 과거에 방영하였던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2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게시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시정권고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번을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번 내지 3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89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번 내지 35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오래된 게시물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다음 보고

서부터는 안전표에 게시일자를 기재해 주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실 듯하여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35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6번~5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 등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6번 내지 52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위원: 마찬가지로, 다음 보고서부터는 안전표에 게시일자를 기재해 주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6번 내지 52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번 내지 8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 '◎◎', '☼☼☼' 등에서 'EV B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32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3번 내지 84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3번 내지 84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5번 내지 10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불법복제물 총 27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85번 내지 102번,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5번 내지 102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3번 내지 126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 공유 게시물 총 24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각 원저작물은 순번 114, 115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영상저작물의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파일을 제작 및 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대본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을 제공중인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기존 심의 사례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03번 내지 126번 영상물의 자막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영상은 없는지?

- 김선화 선임: 해당 블로그에 영상은 게시되어 있지 않음.

- B 위원: 그렇다면 영상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인지?

- 김선화 선임: 불법으로 다운받아야 하고, 국내 방영 전 영상들이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없으므로 한글 자막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임.

- B 위원: 민원인이 권리자는 아닌 것이 맞는지?
- 김선화 선임: 권리자는 아님.
- A 위원: 공식 방영중인 자막과 동일한 자막인지?
- 김선화 선임: 동일하지 않음. 방영 전에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임.
- B 위원: 기존 심의 사례를 보면, 공식 자막을 그대로 불법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은 가결이고, 본인이 번역하여 공유한 것은 부결인데 권리가 신고한 경우에는 가결하였음. 애매한 부분이 있음.
- A 위원: 광고가 없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취미 내지는 팬심으로 보임. 따라서 본인은 부결 의견임.
- B 위원: 그런데 또 최신 저작물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음.
- C 위원: 이게 지금 방영중인 저작물들인지?
- 김선화 선임: 그러함. 방영중인 시리즈물의 최신 회차를 방영 전 먼저 볼 수 있도록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고, 불법 영상물을 본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함.
- C 위원: 그렇다면 가결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방영 전에 불법으로

보면 사실상 본방송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음.

- A 위원: 그러나 공식 자막이 아님.
- C 위원: 우리가 자막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자막이 결합된 합법 영상물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시장 대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A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봤을 때, 과연 자막에 대한 공정시장이 존재하느냐, 그 시장의 규모가 크냐, 상업적 목적없이 자체 작성한 것을 팬들 간에 공유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음. 다른 분들 의견 주시기 바람.
- C 위원: 방영 직전에 불법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 방송은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저는 가결 의견임.
- B 위원: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삭제까지는 좀 과하고, 자막의 양이 좀 많은 사유로 해서 경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권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삭제 조치까지는 과하다는 취지로 경고 가결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경고 가결에 동의하지만, 이번 사안도 전체위에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3 내지 126번은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전체위 논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7번 내지 306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71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7번 내지 3061번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35013호~135114호(순번 1번~102번)에 대해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35115호~135138호(순번 103번~126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그 외 안전번호 제 2023-135139호~138073호(순번 127번~306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28.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